

<經營事例>

製糖業의 마아케팅

金 元 銖

[I] 沿 革

우리나라에서 製糖이 비롯된 것은 1917년 平壤近郊에 設立된 朝鮮製糖이 그嚆失이나, 이 會社는 施設導入조차 하지 않았으며 1920년에 설립된 大日本製糖에 吸收合併 되어버려 실질적인 生產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大日本製糖에서는 平壤近郊의 船橋里에서 甜菜糖의 生產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1945年 解放 이후 1953년 10월에 日產 25%의 施設을 갖춘 第1製糖이 설립되어 설탕의 國產化가 비롯되었고 이에 이어 여러 會社가 設立되었다가 稼動을 중단하는 과정을 거쳐 74년 현재 3社만이 가동 중이다(表 1 참조).

<表 1>

會 社 名	設 立 年 度	稼 動 年 度	操 業 中 斷 年 度	備 考
第 一 製 糖	1953	1953		
東 洋 製 糖	1954		1958. 1	
韓 國 精 糖	1954		1958. 5	
三 養 社	1955			
金 星 (中央) 製 糖	1956		1958. 3	
海 泰 製 菓 製 糖 部	1956	1957	1958. 7	
大 東 製 糖	1956	1957		
釜 山 製 糖	1961	1961	1971.	
東 立 產 業	1969		1973.	

[II] 商品特性

오늘날 우리가 愛用하고 있는 설탕은 印度에서 起源된 것으로서 B.C. 326년경 알렉산더大王이 印度遠征時에 처음으로 西洋에 傳來되었다 하며 古文集에 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高麗朝에 傳來되었다는 記錄이 있다고 한다.

설탕은 營養보다는 热量이 많은 食品으로서 1g 중엔 3.95카로리(calorie)가 포함되어 있다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

설탕에는 甘蔗 즉 사탕수수에서 만든 甘蔗糖(cane sugar)과 甜菜, 즉 사탕무에서 만든 甜菜糖(beet sugar)의 두 종류가 있다. 前者は 甘蔗의 壓搾汁을 煮沸濃縮하여 含蜜糖을 얻은 다음 遠心分離機로서 分蜜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原(料)糖 또는 粗糖(raw sugar)이라 하며, 이를 더욱 精製한 것이 精製糖(refined sugar)이다. 이에 대해 浸出法을 사용하여 甜菜에서 糖分이 浸出되도록 하고 이 浸出液을 前者的 製法에 준하여 清淨, 結晶, 分蜜過程을 통해 직접 설탕을 分離한 것이 後者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原糖 즉 粗糖은 제조되지 않는다.

糖製糖은 結晶粒子의 크기에 따라 雙白, 精白, 中白 및 三溫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特徵과 主用途를 보면 〈表 2〉와 같고 精白糖의 成分을 보면 〈表 3〉과 같다.

〈表 2〉

종 류	특 징	主 用 途
雙 白 糖	粒子가 가장 큰 白雪糖	特殊製菓用, 특히 눈깔사탕의 表面 coating用
精 白 糖	粒子가 가장 고운 白雪糖	家庭用, 제과, 제빵
中 白 糖	粒子가 약간 黑은 黃色糖	제과, 제빵
三 溫 糖	白糖과 中白糖을 뽑고 나서 최종적 으로 생산함	下級菓子, 카라멜色度原料

〈表 3〉

성 분 분 석 표

제품명 : 정백당

분 석 항 목	결 과
성 수 회 색 당 전 증	상 분 분 가 도 화 금
	백 색 결 정
	0.05 %
	0.03 %
	0.27 %
	99.5 %
	0.030%
속	불 검 출

단, 색 가는 stammer비색계에 의한 것임.

설탕은 韓國工業規格에 규정되어 있는데 規格番號는 KSH 2003이며 保社部令에 규정한 食品의 規格 및 基準에 따르고 있다.

설탕에 代用되는 甘味資源으로는 꿀, 옛, 조청, 甘草, 포도당 및 人工甘味料인 사카린 등이 있다.

近間 설탕의 品貴現象이 생기자 설탕 消費節約과 아울러 사카린의 使用許可問題가 대두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알사탕, 벌꿀, 食빵, 離乳食, 물엿 및 포도당의 製造에는 사

카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禁止하고 있는데 이중 製빵, 製菓 및 離乳食 등의 제조에는 이를 許可하여 주도록 要求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사카린의 有害與否를 둘러싸고 數年來 贊反兩論이 엇갈리다가 73년 7월부터 食品醫藥廳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自由食의 경우 成人은 1人 1日 1g 이하, 飲料의 경우는 1온스當 12mg만 摄取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이의 使用을 規制하지 않고 있다.

[III] 生產 및 原糖輸入

精製糖의 原料인 原糖은 전량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의 收率은 92%이다. 1956년 3월에 大韓製糖工業協會가 設立되어 原糖의 實需要者로 指定되고 協會에 弗貨가 配定되면 會員各社에 施設能力에 따라 再配定되는데 74년 현재의 各社別 配定比率은 다음과 같다.

第一製糖 : 49.2%

三養社 : 32.8%

大韓製糖 : 18.0%

74년의 推定年間總施設能力은 약 40~41萬 吨이다.

1965년 이래의 原糖導入實績을 보면 <表 4>와 같다.

1950년대 末까지는 原糖購買資金으로서 援助資金이 配定되었으므로 비교적 原糖導入이 順調로 왔다. 그러나 1959년에는 援助資金의 配定이 中斷되고 自由弗로 轉換됨에 따라 原糖購買事情이 逼迫하게 되어 某製糖會社에서는 輸出代錢으로 사용할 軍納弗의 獲得을 위해 통조림 軍納事業에 進出하는 事例도 빚어 졌었다.

<表 4>

年 度	原 糖 導 入 實 績	對 前 年 增 加 率
65	49,439%	—
66	85,738	73.4
67	143,055	66.9
68	156,519	9.4
69	202,447	29.3
70	229,074	13.2
71	260,308	13.6
72	218,909 (1)	-15.9
73	321,946 (1)	47.1
74	300,000 (2)	-6.8

(1) 運貨包含分임

(2) 74年分은 國內消費用 推定分임

이처럼 原糖導入資金上의 制約이 뒤따름으로써 原糖導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下述하는 바와 같이 加速化되는 需要推移와 더불어 63년에는 原糖不足으로 설탕의 供給이 순조롭지 못하여 마침내 64년에는 世稱 3紛波動으로 알려져 있는 설탕의 品貴現象이 빚어졌다.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原糖市場에 變化가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곧 原糖의 主產國인 큐바와 東歐圈 및 소련이 凶作이 된데다가 오스트레일리아도 大洪水로 凶作이 겹쳤으며 72년에 이르러 소련은 200萬t이나 原糖을 輸入하는 原糖輸入國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美國에서는 사탕수수 栽培業者가 米作으로 轉換하는 것과 같은 供給面에서의 減縮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日本 및 中東諸國이 原糖을 買占하는 등 原糖流通上의 硬塞이 마침내는 原糖需給을 不均衡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國際原糖機構(I.S.O. 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에서는 74년의 生產量은 7460萬t인데 需要是 이를 180萬t이나 上廻하는 7640萬t이 되리라豫測하여 漫性的 供給不足現象이 있음을豫測하였는데 이는 原糖價格의 引上에 부채질을 하게 되었다.

〈表 5〉

年 度	原 糖 價 格	指 數	備 考
73. 7.	183	100.0	
9.	250~270	136.6~147.5	
	320	174.9	
74. 2.	360	176.7	
6. 1	563	307.7	
	605	330.6	既契約導入分價格
	610	333.3	"
6. 5	620	338.8	
6. 10	630	344.3	

그리하여 73년 9월에는 國際雪糖機構의 國際原糖價格協定이 決裂되어 原糖去來가 一般時勢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原糖價格은 〈表 5〉에서 보듯이 급격히 謂貴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原糖導入面에서의 資金負擔이加重되게 되었다.

〈表 5〉에서 보면 原糖時勢는 73년 7월의 國際原糖協定價格 \$183을 기준으로 할 때 2.4倍로 暴騰하게 되었던 것이다.

[IV] 需要 及 消費

60年 이래의 설탕需要를 보면 〈表 6〉과 같은데 설탕需要는 73년의 경우 60년에 對比할 때

〈表 6〉

年 度 別 販 売 實 績

年 度 別	販 売 實 績	對前年增加比	指 數
60	68,752(%)	—	100.0
61	57,942	-15.7	84.3
62	52,882	-8.7	76.9
63	31,914	-63.8	46.4
64	11,235	-64.8	16.3
65	34,125	203.7	49.6
66	61,579	80.5	89.6
67	98,674	60.2	143.5
68	129,122	30.9	187.8
69	176,187	36.5	256.3
70	200,294	13.7	291.3
71	230,884	15.3	335.8
72	197,649	-14.4	287.5
73	253,447	28.2	368.6

약 2.7배가 증대되고 있다.

1人當消費量을 日本의 경우에 對比하여 보면 〈表 7 參照〉 三紛波動을 겪었던 64년에는 $\frac{1}{37}$ 밖에 되지 않았으나 70년대에는 약 $\frac{1}{4}$ 의 水準에 이르고 있다.

설탕의 需要패턴을 보면 工業用은 3~5月 및 10~11月의 兩次에 걸친 盛需期가 있고 一般家庭用은 6~8月이 盛需期이다. 用途別 需要比率를 보면 工業用이 약 60%를 占하는데

〈表 7〉

1人當消費量의 推移

年 度	區 分		倍 率(B/A)
	韓 國	日 本	
60	1人當소비량 kg/年(A)	15	5.8
61	2.6	16	6.2
62	1.8	16.3	9.1
63	1.2	17	14.2
64	0.5	18.5	37.0
65	1.2	19.5	16.3
66	2.1	20.5	9.8
67	3.3	22	6.7
68	4.2	23.5	5.6
69	5.5	26.5	4.8
70	6.3	27.5	4.4
71	7.2	29.5	4.1
72	6.1	32	5.2
73	8.0	34.6	4.3

〈表 8〉

(1972년 기준)

用 途	使 用 比 率
清涼飲料水	4.00(%)
製菓用	48.0
製鳴用	4.0
製藥	0.5
통조림	0.5
家庭用	40.0
기타	3.0
計	100 %

이는 약 50餘業種에 이르며 이중 製菓用이 48.0%로서 使用比率이 가장 높다(〈表 8〉 參照).

[V] 販賣

各社의 市場占有率의 推移를 보면 〈表 9〉와 같은데 이에서 보듯 市場占有物은 대체로 原糖配定率과 大差가 없다.

설탕의 유통경로를 보면 某社의 경우 〈表 10〉과 같다. 이에서 보면 消費者에게 판매하는 경우 4段階를 거쳐 판매되고 있는데 當社는 政府의 流通近代化族策에 呼應하여 流通經路를 단축하려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派生되므로 이것이 解決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첫째 代理店에 직접 판매하는 體制로 轉換하게 되면 既存代理店이 源泉徵收義務를 지게 되어 既存代理店이 꺼리며

〈表 9〉

市場占有物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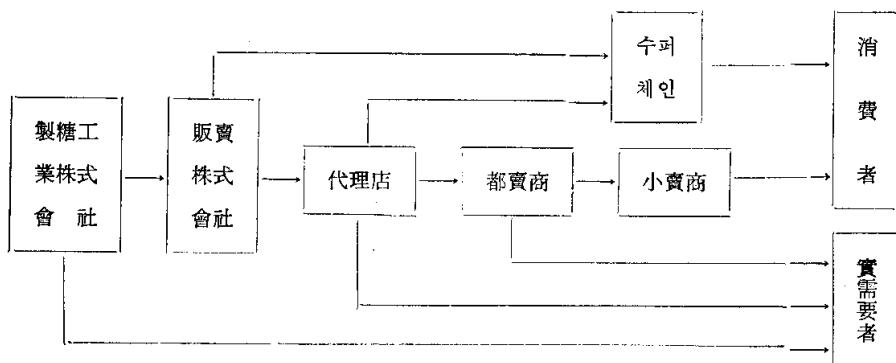
年 度	第一製糖	三義社	大韓製糖
67	51.4(%)	34.1(%)	14.5(%)
68	48.4	34.6	17.0
69	48.4	32.2	19.5
70	49.1	33.5	17.4
71	47.1	30.2	22.7
72	49.6	33.7	16.8
73	50.7	33.7	15.6

둘째 政府指定수퍼·체인에 工場引渡價格으로 直接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一般小賣商의 反撥이 있다는 點이다

현재설탕의 販賣價格은 告示價格에 묶여 있어서 15kg들이 한 부대의 小賣告示價格은 ₩4,700 즉 kg當 ₩313.3이며 工場引渡價格은 kg當 ₩263.3이다.

〈表 10〉

販賣經路



利幅 즉 마아진은 ₩50으로서 工場渡價格에 대해서는 19.0%, 小賣價格에 대해서는 16.0%이다. 그러나 市況의 繁閑에 따라 告示價가 반드시 지켜지고 있지는 않아서 流動的이다. 현재의 告示價格은 74년 초 原糖時勢가 \$360일 때 策定된 것으로서 同業界에 의하면 原糖時勢가 \$630으로 暴騰한 경우에는 採算上 kg當 ₩120원의 損失이 생기므로 만약 年間 25萬%의 需要를 전제로 日當 700kg, 月當 2.1萬kg을 出庫한다고 하면 月間 약 25.2억 원의 損失이 생기게 되리라 하고 있다. 따라서 同業界에서는 價格引上을 요구하고 있으며 價格引上来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설탕을 사치품으로 보아 40%의 高率의 從價稅가 賦課되고 있는 物品稅를 引下 내지 輕減시켜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74년 3월 아래로 설탕은 價格表示品目으로 지정되어 濟州道를 제외한 餘他의 道廳所在地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VI] 最近의 動向

74년 2월 5일에 44.1%나 價格引上이 이루어지자 買氣가 감소되어 在庫가 累增되고 告示價 이하로 去來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6月初에 이르러 價格引上要求가 拒否되고 原糖時勢가 急騰하게 되자 代理店의 制限供給, 消費者와 中間商의 假需要와 아울러 原糖在庫의 不足이 영향을 미쳐 品貴現象이 加重되고 있다.

이에 대해 政府는 昨年度의 水準인 25萬kg水準을 유지하도록 責任出庫할 것을 製糖會社에 指示하여 日當 700kg을 出庫하도록 함과 아울러 保社部는 설탕 消費節約方案을 특히 설탕의 약 50%를 사용하는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물엿과 포도당을 混用함으로써 年間 消費量 81,460kg중의 약 20%에 해당하는 16,456kg을 감축하도록 지시하였으나 業界的 反應은 10% 이

상의 절약은 工程上 不可能하고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 化學人工甘味料인 사카린의 使用許可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製糖業界에서는 商工部의 설탕需給圓滑措置에 관한 緊急指示에 따라 3개 회사의 販賣部, 3개 百貨店 및 3개 슈퍼체인 등 9개處에서 住民登錄證持參者에게 1人當 1kg을 판매하도록 하는 直賣制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64년도의 三粉波動時에도 사용되었던 方法이다.

이와 같은 品貴를 틀타서 人氣品目인 설탕에 非人氣品目인 調味料 등을 끼워 팔거나 단골손님에게만 販賣하는 行爲가 一部 상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社會的으로 物議의 對象이 되었다. 이에 대해 韓國主婦聯合會에서는 “不滿의 窓口”를 통해 20餘件의 申告를 접수하였고 나아가서는 직접 20여곳의 市場에서 이러한 끼워팔기 强賣行爲의 事例를 수집하였다. 또한 직접 관련된 會社인 某社에서는 自社品을 취급하는 代理店과 都賣商으로부터 끼워팔기를 않는다는 覺書를 받았었고, 자체적으로 5개 도시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中間商의 끼워팔기 强賣行爲에 대해서는 申告를 하여 주도록 妥當하였다.

이와 같은 끼워팔기 强賣行爲는 消費者的 自由選擇을 沮害하는 것이므로 物價安定法上 規制對象이 되는 公正去來沮害行爲에 해당되는 不公正去來慣行인 것이다.

이와 같은 最近의 事態의 進展에 對應하여 製糖業界의 經營者는 製糖協會를 중심으로 첫째 설탕가격의 引上을 위한 교섭을 꾸준히 展開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면 物品稅의 引下 내지 調整을 要請하고
셋째 가능한 한 原價切減을 통해 코스트 푸쉬(cost push)를 카버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VII] 討議事項

1. 原糖導入上 制約이 있음은 同業界가 상대적인 資源不足下에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 經營者는 어떠한 方向으로 마아케팅對策을 세워야 할 것인가? (사카린의 사용이 허가된 경우도 아울러 고려할 것)
2. 某製糖會社에서는 政府의 流通近代化施策에 呼應하여 販賣經路를 단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販賣會社의 排除可能性은 어떤가?
3. 製糖業界의 經營者가 결정한 價格引上交涉이나 物品稅引下 내지 調整交涉은 企業內의 要因보다는 企業環境要因인 政府의 政策과 관련되는 企業外의 問題解決方案인데

現下韓國의 企業現實과 관련하여 이러한 方向으로의 問題解決은 不可避한 것일가? (價格引下의 가능성과 物品稅의 引下가 需要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등을 아울러 고려할 것)

4. 假想的으로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低카로리 콜라가 開發出市되어 이의 販賣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商品의 廣告上의 訴求中心點이 “설탕을 뺀 것”을 主題로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마아케팅 環境上의 變化가 생겼다고 할 때 이는 製糖業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